

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6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처분기준에서 "1차"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, "2차"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, "3차"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처 분 기 준		
		1차	2차	3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·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)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2) 법 제9조제7항·제14조제2항·제23조제1항·제24조제1항·제54조제1항·제57조제2항·제59조제2항·제78조제1항·제82조제2항·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3) 법 제95조제2항·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	법 제116조 제1항제1호	허가 취소 승인 취소 지정 취소		
나.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법 제116조 제1항제2호	사업중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	허가 등의 취 소	
다. 법 제9조제8항·제61조·제82조제2항·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	법 제116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승인 취소

다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	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